

「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00호)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6월 7일
중 소 기 업 청 장

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와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제도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관련근거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2 및 제2조의3

3. 주요내용

- 가.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)
- 나. 제조 소기업등에 대한 추천방법(안 제3조 신설)
- 다. 조합 추천에 대한 제한사항(안 제4조 신설)
- 라.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(안 제5조 신설)
- 마. 고시의 폐지, 개정을 위한 재검토기한 설정(안 제6조 신설)

4. 입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